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성제품인증

## 중국강제성제품인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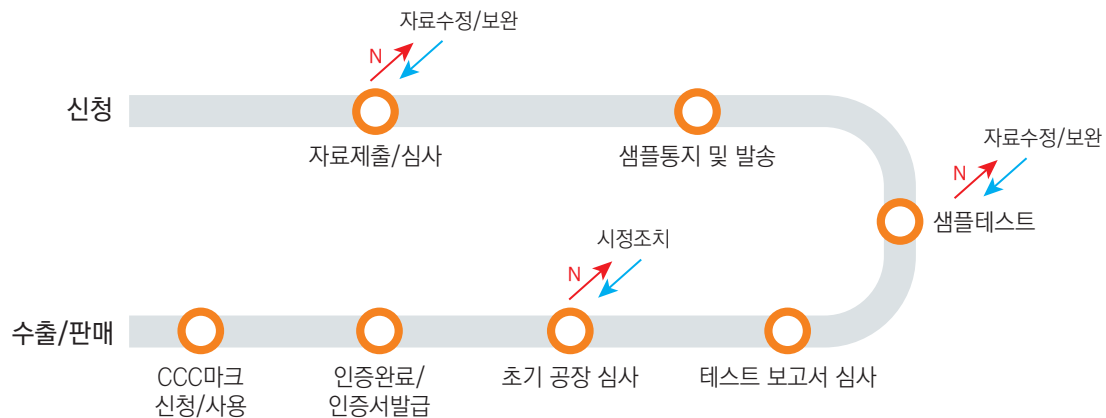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은 CCC 인증 또는 3C이라고도 하며, 전기 전자, 자동차, 완구 등의 제품군에 대한 품질 안전(전자파) 인증 제도로써 한국에서 중국 시장으로 수출 및 판매 시 해당 품목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 으로부터 CCC 인증서를 획득한 후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제44호 공고에 따라 일부 CCC 제품군은 자아성명 등록 방식 으로 진행 후 CCC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 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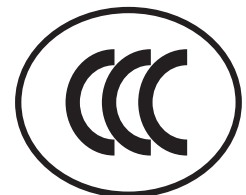
•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전기제품	• 소전력 모터	• 방폭제품
• 완구	• 안전 유리	• 네트워크 제품
• AV IT 제품	• 조명 기기	• 전기 용접기
• 자동차 및 안전 부품	• 이륜자동차 및 안전 부품	• 가정용 가스제품
• 전선 및 케이블	• 자동차 타이어	
<b>* 추가 품목 (2022.09)</b>		
• 리튬 이온 전지 및 전지팩, 보조배터리	• 통신단말기 조립용 전원 어댑터, 충전기	

### ○ 신청절차



### ○ 인증마크

CCC 마크는 스티커 구매 또는 인쇄, 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쇄, 각인 사용 시 CCC 마크 관리 규정 내 사이즈 요구에 따라 기업에서 자체 제작 사용 가능하며 스티커 사용 시 해당 인증기관에서 구매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인증서 정지, 철회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QC

China Voluntary Certification

중국자율성제품인증

## 중국자율성제품인증 개요

CQC 자율 인증은 CQC 인증 기관에서 추진하는 자율성 인증 제도로써, 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의 안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CQC 자율 인증은 안전·성능·EMC 표준 요구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하며,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기계설비·자동차 부품류 등 총 500여 종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완제품 CCC 인증 진행 시 CQC 인증 승인 부품을 사용하면 별도의 부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차 및 필요서류는 CCC와 동일합니다. (일부 품목 제외)

### » 전기전자 제품

- 가전제품, 전기전자 부품류

### » 자동차 부품 및 전장품

- 내장재, 도어래치 등 자동차 부품 및 차량탑재 전기전자 제품 등

### » CHINA RoHS 및 비금속 재질

- 가전, AV/IT 제품 등의 CHINA RoHS 인증, 비금속 재질 및 부품 인증

### » Type II 제품인증

- CCC 자아성명해당 제품군

## ○ 인증마크

CQC 마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청업체 요청 및 승인 후 사용가능합니다.  
마크제작은 인쇄, 각인 사용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자체 제작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서 정지, 철회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CC 자아성명 등록

자아성명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기존 CCC 인증 절차 방식이 아닌 자아성명 플랫폼에 등록 완료한 후 CCC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자아성명 등록 방식은 직접 정보 플랫폼에 등록 완료하는 방식과 제 3 인증기관의 인증서 획득으로 자아성명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 중에 선택 진행 가능합니다.

\* CCC 자아성명 대상 품목은 CQC 인증 마크 사용 불가

## ○ Contact Us



02-6393-5863/5846/5852/5862



public@ccickorea.com

#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특종설비제조허가

## ○ 제도소개

CSEL은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의 약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설비 또는 부품에 대한 중국의 제조허가 제도입니다.

특종설비에 해당되는 제품을 중국 내에 판매, 유통 또는 설치하려면 제도에 따라 특종설비 제조 허가를 취득하거나 관련 기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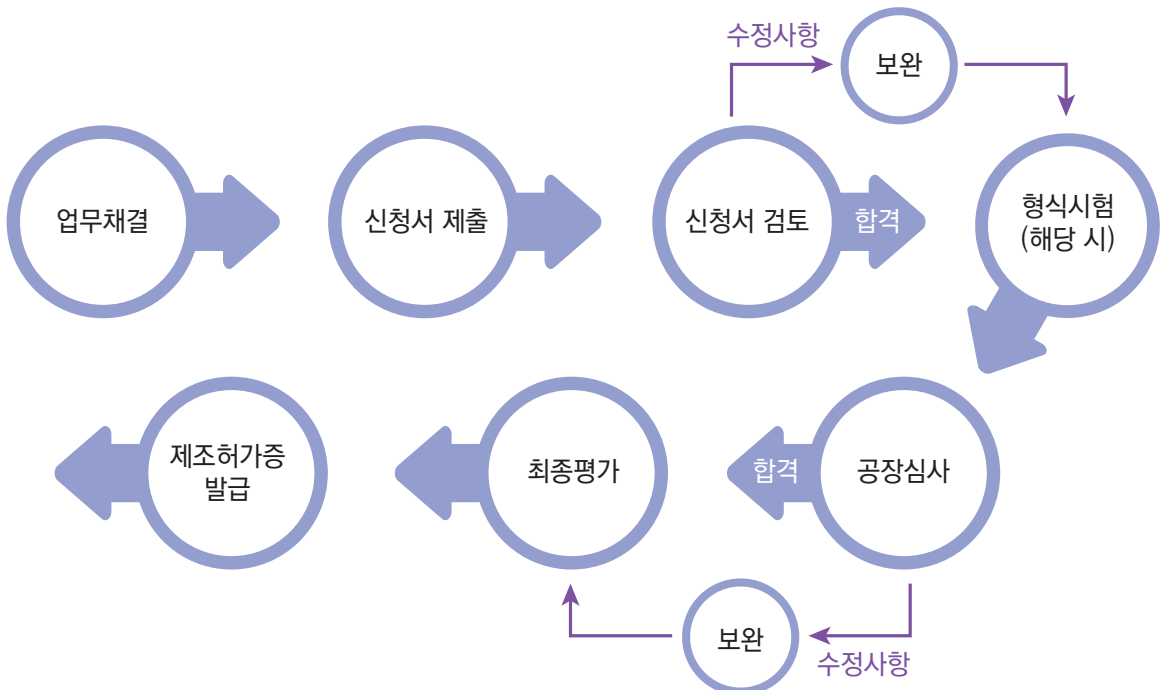
중국 현지 수입자는 제품 구매 후 설치 및 사용 전에 해당 지역의 특종설비감독관리 정부 부처에 사전에 고지하여 신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대상품목

- 보일러
- 안전부품
- 압력용기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압력배관
- 크레인 기계
- 압력배관 부품
- 공장 내 전용차량



## ○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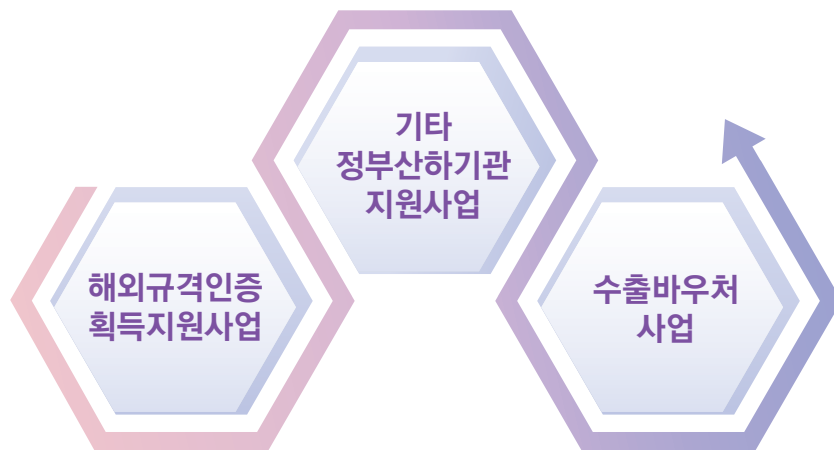


## ○ 필요서류

- 특종설비 제조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서, 도면, 설계문서 등
- 공장 소개서
- 제조 공정 관련 자료(인력, 설비, 장비 등)
- 공장 품질 매뉴얼
- 시제품 관련 자료
- 기타 보충 자료



## ○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 ○ Contact Us

 02-6393-5859/5858/5850

 [public@ccickorea.com](mailto:public@ccickorea.com)

# KC

Korea Certification Mark

국가통합인증마크

## KC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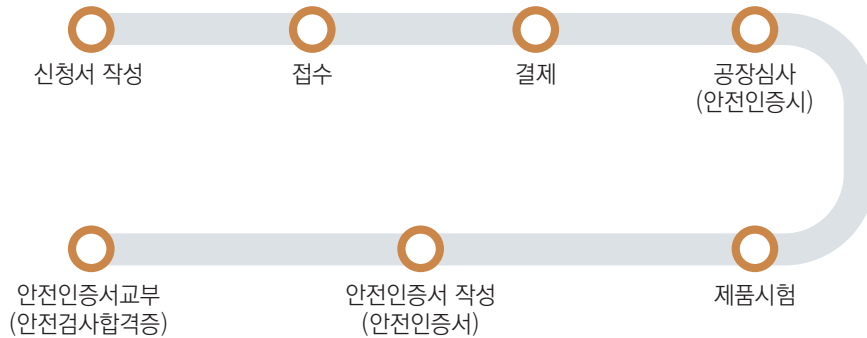
KC 인증은 일반적으로 안전과 전자파 규격에 따라 진행되며, 2012년 7월1일부터 KC 안전과 전자파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인증유형 및 범위

	KC Safety	KC EMC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용(Safety Certification)</li> <li>안전확인(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li> <li>공급자적합성확인(SDo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합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li> <li>적합등록(Registration of Compatibility)</li> <li>임의인증(Interim of Conformity)</li> </ul>
범위	전선케이블, 저전압기기, 전동공구, 가정용 및 유사용도설비, 음향 및 정보 기술 설비, 조명 설비 등	EMC 전자파와 관련한 설비, 무선 통신, 유선통신 가정용 및 공업용 제품

### 인증절차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구분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	○
공장확인	제조·검사설비	○	확인 안함
	원자재·공정검사	○	확인 안함
	제품검사	○	확인 안함
인증신고		인증서 발급	신고증명서 발급
정기 사후관리 (제품시험+공장확인)		○	정기심사 없음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전자파 관련한 인증은 공장 심사 불필요

# KCs

Korea Certification Mark

국가통합인증마크

## KCs 인증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유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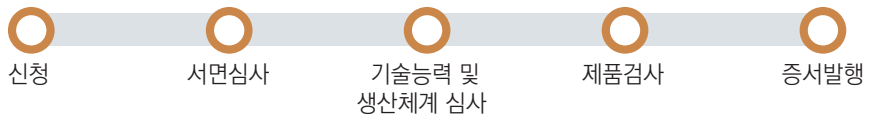
	KCs 안전인증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범위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절단기, 프레스, 고소작업대, 프레스 등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식품가공용 기계, 공작 기계, 연삭기/연마기 등

### 의무자

서면(수입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제품심사	개별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작중 검사(개별)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형식별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 인증절차

#### (-)KCs 안전인증



####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 Contact Us



02-6393-5863/5846/5854



public@ccickorea.com

# 중고설비선적전검사

## 중고설비선적전검사

신체건강 및 신체안전·위생·환경보호 등 특정유형에 관련된 중고기계설비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기술표준의 강제적 요구에 의거하여 반드시 선적전검사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CCIC KOREA에서는 중국향 중고기계설비에 대해 신속, 공정, 정확한 선적전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검사항목

중고설비선적전검사	
검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치성 검사</li><li>• 수입 금지 품목 유무 검사</li><li>• 기계 안전 검사</li><li>• 전기 안전 검사</li><li>• 위생, 환경보호, 에너지효율 등 검사</li></ul>

### ○ 인증절차



### ○ Contact Us



02-6393-5825/5822/5832



jjd@ccickorea.com

# 반송업무

## 반송업무

수출화물이 품질이나 규격에 관련 문제로 인해 수출통관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 상태로 다시 중국으로 반송할 경우 재수입 등 증명 자료와 같이 사용되며 原수출업체가 해당 반송상품에 관한 일부 수입관세도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 검사유형 및 범위

	불량품 검사	반송수리 검사
범 위	중국에서 다른 해외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품질, 규격, 사이즈, 외관 혹은 기타 다른 불량 원인이 발생하여 반품 하는 것	중국에서 다른 해외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품질, 규격, 사이즈, 외관 혹은 기타 다른 불량 원인이 발생하여 반송수리 후 재수출을 하는 것

### ○ 인증절차



### ○ Contact Us



02-6393-5825/5822/5832



jjd@ccickorea.com



# 중국 NMPA 화장품 등록

## ○ 중국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개요

중국 화장품 수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으로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허가한 화장품 만이 중국에서 정식 판매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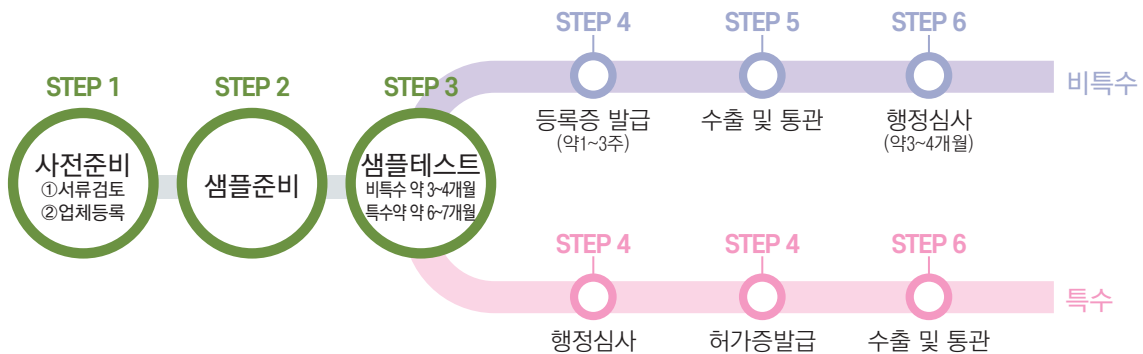
## ○ 관련 법규 및 근거

-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 화장품 라벨관리방법
-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방법
- 상기 외 · 관련 통보문 및 세칙

## ○ 특허 및 허가 대상

-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일반화장품(비특수화장품)**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네일, 방향제, 영·유아 제품류
- **특수화장품** : 미백, 자외선 차단(영·유아), 염색, 펴 등 새로운 기능성 홍보 화장품류

## ○ 인증주기 및 절차



## ○ 제출서류

- 전 성분
- 일부원료 COA 및 원료 제조공정도
- 제품공정도
- 포장 패키지 디자인
- 자율판매 증명서(CFS)
- 모든 원료의 신고번호 혹은 안전성정보표 (Annex 14)
- ISO9001 & 22716 or CGMP
- 성분에 따라 COA 및 제조공정도
- 제조사 위탁가공 협의서
- 효능 테스트보고서 (홍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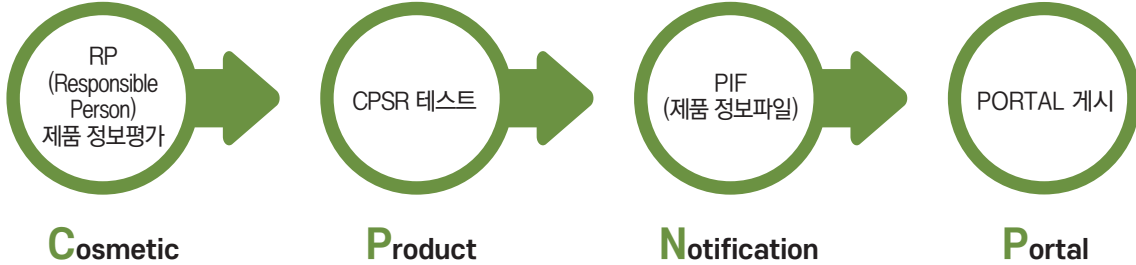
## ○ Contact Us

☎ 02-6393-5828/5866/5850

✉ public@ccickorea.com

# 유럽 CPNP 화장품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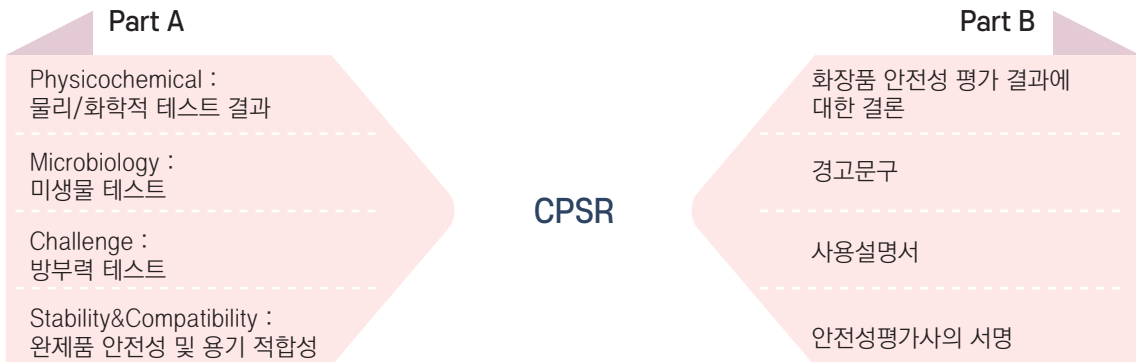
## ○ 등록 절차



## ○ RP(Responsible Person)

- EU 내 제조업자
- 수입자
- 제조 · 수입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 EU 외에서 제조된化妆품을 EU 국가로 유통시키기 위해 유럽 내 책임자 지정 (의무)

## ○ CPSR 테스트 항목



## ○ 제출서류

- 제품 성분표 (INCI, CAS, 함량, 성분 기능 등)
- 원료 및 최종 제품의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설명서
- GMP를 준수한 제조법
- 제품의 안전성 평가
- 안전성 평가사의 정보
-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자료
- 제품 효과 및 특성에 대한 증빙서류
- 동물실험 자료 (데이터)

## ○ Contact Us



02-6393-5828/5866/5850



public@ccickorea.com